

※ 해당 수강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신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때에 제출하는 수강확인서입니다. 확인란에는 V표시 O표시 등을 통해 우측에 작성된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는 성명, 생년월일, 자체수강일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확인란
☐

본인은 교육자료의 내용에 따라 구직급여가 본인의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점을 인지하였음

확인란
☐

또한, 마지막 이직 사업장과 관계가 없는 사업장에 소정급여일을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 구체적인 지급여부 판단은 신청 이후에 결정되는 점도 인지하였음

확인란
☐

한편, 구직급여는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실업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재취업활동 사실을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때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확인란
☐

마지막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재취업활동 증빙자료와 인터넷 및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방법을 숙지하였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강일: